

## 이의 신청 독촉

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(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, 박홍우 부장판사)  
원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 
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

위 교수지위확인사건 관련, 두 번의 선고기일(6월 16일, 7월 21일)을 연기,  
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의 박홍우 재판장의 파행적인 재판진행에 대하여

### 민사소송법 제138조 (합의부에 의한 감독)

“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  
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  
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.”

에 따라 제기한,

1. 9월 15일자 첫 번째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
2. 11월 9일자 두 번째 (석명준비명령)이의신청 독촉 및 추가 이의 신청

에 이어, 2 번째 이의 신청 독촉입니다.

특히, 11월 9일 자 두 번째 이의신청에서, 원고는 배형주 증인신문에 대한  
이의를 제기하였는 바,

### 민사소송 규칙 제97조 (이의신청)

- ①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 
또는 조치가 있는 후 바로 하여야 하며,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 
한다.
-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  
하여야 한다.



에 따르면, 증인신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서울고법 민사 2 재판부에 촉구합니다,  
민사소송법 제 138조와 민사소송규칙 제97조에 따른 재판의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 바랍니다.

2006년 12월 7일

위 원고 김명호



<http://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tocourt.htm>

<http://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2seokm2.htm>

서울고등법원(민사 제2부 나) 귀중